

□ 창업의 범위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를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1. 일반유흥주점업(56211)
2.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4.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의 업종 분류 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 ②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③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 ④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불인정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불인정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후 창업 시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불인정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불인정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후 창업 시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후 창업 시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불인정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불인정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 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 과 또는 최대주주	불인정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 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 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불인정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불인정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불인정	
	이종		창 업	

-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 신청가능 여부 : "창업여부"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로서 위 기준에 해당. 단,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만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신청 가능
-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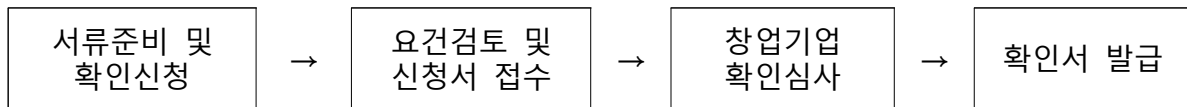
-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창업기업확인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에 별도 안내

< 창업기업 확인서 신청방법 및 절차 >

◆ 창업기업 확인서 신청

- (신청방법)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cert.k-startup.go.kr)
* 제출서류, 발급 처리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확인 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신청문의) 1811-3773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 콜센터)

◆ 창업기업 확인서 신청 절차



- 1) 창업기업 확인 신청 후 발급 시까지 최대 10일(규정상 기일)이 소요되며, 창업기업 확인 신청 서류가 미비하여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소요되는 준비기간은 규정 기일 10일 내 미포함
- 2) 창업기업 확인이 되더라도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어야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여 중소기업 확인서 미발급 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신청 필요